

## 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33호

「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8일

금융위원회

### 1. 개정이유

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(2020.8.25.) 취지에 따라,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, 적극행정 면책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 내용

#### 가.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(제명, 안 제1조 및 제2조)

위원회 명칭을 ‘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’에서 ‘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’로 변경하고 제명을 정비함

#### 나. 위원회 기능 확대(안 제3조)

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에 제4의2호 ‘감사원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함

다. 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운영 효율화(안 제4조)

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3명에서 최대 45명 이하로 확대하고,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위원 대리출석 및 분과 소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, 전화 : 02-2100-2805, 팩스 : 02-2100-2777, 이메일: ncw1122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